



#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

2024. 9.



한국에너지공단  
신·재생에너지센터



# 목차

CONTENTS

1

신재생금융지원 사업개요

2

신재생금융지원 예산 및 지원조건

3

신재생금융지원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

4

'25년 고정가격 경쟁입찰 태양광 지원안



# 1 신재생금융지원 사업개요

## 사업개요

- **(사업목적)**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시설에 **장기저리의 용자지원**을 통한 **보급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** 마련
- **(기대효과)**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

## 주요내용

### 사업근거

- 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7조
- 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부 고시)

### 지원대상

- ☑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·생산·설치하려는 개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 등

### 참여방법

- ☑ 공고내용에 따라 자금신청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신청
  - '24년 접수기간 : (1차) '24.3.11~18 → (2차) '24.5.27~6.3 → (3차) '24.9.9~예산마감시

### 지원내용

- ☑ **(지원비율)** 중소기업 80%, 중견기업 60%, 대기업\* 40% 이내
  - \*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용확인(RE100) 대기업

# 1 신재생금융지원 사업개요

## 사업절차

### 1 사업공고

산업부 공고  
(’24.2.8 완료)

- ☞ 당해연도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통해 **예산, 지원대상 및 접수일정 등 안내**

### 2 자금추천 신청

자금신청자 →  
신재생E센터

- ☞ 자금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**온라인 신청**  
-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의 **공동 인증서** 필요

### 3 자금추천심사

신재생E센터

- ☞ 서류검토 후 대상 부적격 및 보완 필요 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
- ☞ **500kW 미만의 태양광**의 경우 종합지원센터 검토 담당자가 진행

### 4 추천서 발급

신재생E센터

- ☞ 심사, 평가 결과에 대해 **추천 결과를 신청자 휴대폰 SMS로 안내**
- ☞ 추천서는 추천 신청 홈페이지(로그인 후)에서 출력 가능

# 1 신재생금융지원 사업개요

## 사업절차

5

### 대출신청

자금신청자 ↔  
금융기관

- ☞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**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진행**  
- 단,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

6

### 최초·중간인출

자금신청자

- ☞ 발급일 기준 **3개월 이내로 최초 인출(추천액 기준 20% 이상)** 시행  
- 최초 인출 미 실행 시 추천 취소,  
- 100kw 미만 태양광은 4개월 이내 전액 인출 필요

7

### 완공·최종인출

자금신청자

- ☞ 시설 설치 등 완공에 따른 **최종인출 완료**  
- 추천서 발급 연도(12월 31일) 이내 전액 인출해야 함

8

### 사후관리 /실태조사

신재생E센터,  
금융기관  
→ 자금사용자

- ☞ 최종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**추천설비 설치여부 확인** 등 진행
- ☞ **대출금 부당 사용**이 적발되었을 경우 **연체금리 적용, 환수 조치**

## 2 '24년 신재생금융지원 예산 및 지원조건

- 신재생 지원예산 총 3,633억원이며, 시설자금에 3,593억원 배정  
연간 3차에 걸친 정기접수 기간 중 1차에 예산 90% 배정, 2차 10% 배정, 3차 잔여예산 배정

### '24년 지원예산

자금 용도		예산(억원)	비 고
금융 지원	시설자금	3,593	신·재생에너지 <b>설비를 설치</b> 하는 데 필요한 자금 -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·개수공사비, 보수비·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
	생산자금	20	신·재생에너지 관련 <b>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</b> 을 지원 - 신·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-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제외
	운전자금	20	신재생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<b>사업운영</b> 에 필요한 자금 지원 -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
합 계		3,633	

### 참고 태양광 시설자금 세부분야 (상세사항 공고문 참조)

#### 핵심사항

**RE100 태양광**  
'재생E 사용 확인서' 발급을 위해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RE100기업

**마을 태양광**  
이격거리 준수하는 기초지자체에서 거주조건을 만족하는 주민이 **협동조합 구성**

**산업시설 태양광**  
산업단지 및 공장 지붕 위 또는 해당부지

**도심 태양광**  
건축물 또는 시설물 위 설치 (농어업시설 불가)

**농어촌 지역 태양광**  
농·축산·어업인 대상 임야, 농지 지원불가 동·식물시설 중 우사만 지원

## 2 '24년 신재생금융지원 예산 및 지원조건

### • 용도별 세부 지원조건

자금용도		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	지원비율
시설 자금	풍력 분야	500억원 이내	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	분기별 변동금리 ('24년 3/4분기 기준 2.00%)	중소기업 (개인 및 협동조합) : 80% 이내
	태양광 분야	300억원 이내	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		
	바이오 분야	100억원 이내	3년 거치 5년 분할상환		
	기타 에너지원	100억원 이내	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		
생산 자금		300억 원 이내	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		중견기업 : 60% 이내
바이오 분야		100억 원 이내	3년 거치 5년 분할상환		
운 전 자 금		10억 원 이내	1년 거치 2년 분할상환		
					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(RE100) 대기업 : 40% 이내

### 3 '24년 신재생금융지원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

#### '24년 금융지원 지원방향

##### • 유휴부지 및 신시장 집중지원

- 산업단지 및 공장, 건축물 및 시설물\*등 보급 여건이 양호한 유휴부지 중심 (정기접수)

\* 전력다소비 지역으로 계통 부담이 적으며, 개발이 완료되어 수용성 高

- 마을태양광\* 등 보급 초기시장 집중지원 (상시접수)

\* (요건)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 또는 면제하는 기초지자체에 소재, 해당 지자체 1년 이상 거주주민이 10인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·운영하는 발전사업

##### • 친환경 확대

- 탄소검증제와 연계, 저탄소모듈 사용 의무

\* 탄소배출량 670kgCO<sub>2</sub>/kW 이하만 지원가능

##### • 예산 효율화

- 용자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보급효과 확대

\* (23년) 중소기업 90% → (24년) 중소기업 80% 등

### 3 '24년 신재생금융지원 지원방향 및 유의사항

#### 유의사항

- ① 전년도 10월 이후(10/1~)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(시공업체와의 서면계약서 계약체결일 기준)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하며, **공사 착공일은 착수일(계약일) 이후**여야 함
- ① 착공된 발전소에 한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시 **“공사계획 신고필증” 제출 필수**  
단, **100kW 미만 태양광**의 경우 자금신청일 이전에 **“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”**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
- ① 자금 신청금액이 **3,000만원 미만**인 경우 **지원대상에서 제외**  
\* 총 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
- ① 설치자금의 일부를 **무상 지원받은 시설** 및 **동일시설은 중복 신청**할 수 없음
- ① **연내 발전소 준공** 및 **자금 최종 인출이 가능한 사업**에 한하여 자금 신청하여야 함(계속사업 제외)
  -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(20% 이상)을 하지 못할 시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
  - **100kW 미만 태양광**의 경우, 추천서 발급 이후 **4개월 이내**에 최종 인출되어야 함

## 4 '25년 고정가격 경쟁입찰 태양광 지원안

### 경쟁입찰 태양광 지원안

#### 상시접수 대상 선정

- “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설비”를 “상시접수”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

\* 단, 태양광 시설자금 5개분야에 해당되어야 하고, 공고 및 분야별 세부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
(예시) 저탄소모듈(670kgCO<sub>2</sub>/kW 이하) 사용,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한 사업 등

- “상시접수” 대상은 **배정액 내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** (초과시 정기접수로 전환)

\* '24년 상시접수 배정액: 600억원 / 상시접수 대상: RE100태양광, 마을태양광

- '25년 금융지원 사업 지원비율 하향 조정시에도, **현 지원비율 수준으로 우대 적용 예정**

\* 現 지원비율: (개인, 중소기업) 80%, (중견기업) 60%

※ 상기의 사항은 검토 중인 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KOREA ENERGY AGENCY



한국에너지공단  
KOREA ENERGY AGENCY